

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

제정 2015년 6월 9일 조례 제1405호
일부개정 2020년 7월 10일 조례 제179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인권”이란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2. “시민”이란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주소를 가진 사람
 - 나.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
 - 다.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② 시는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.

제4조(책무)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,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5조(시민의 협력) 시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에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오산시 인권

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

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해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·보완
2.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3.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
4.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공청회를 열어 시민,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,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그 결과를 다음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.

제7조(인권교육)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(시장의 지도·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, 사업장,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교재 개발 및 강사 양성·지원
2.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의 구성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체계의 마련에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.

제8조(재정 등 지원) ① 시장은 효율적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권관련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

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재정적 지원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인권지수 개발)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에서 권고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·개발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

2.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

3.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

4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. <후단삭제 2020. 7. 10>

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<개정 2020. 7. 10>

1.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2. 오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

3.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하여 학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팀장이 된

다. <개정 2020. 7. 10>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3조(의견청취 등)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0. 7. 10 조례 제1792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